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2026년 제3차 소속시설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소속시설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2월 23일
(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I

채용개요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채용직위	채용인원	고용 형태	직무내용	비고
합계		5명			
전북특별자치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임	2명	정규직	◦ 노인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관리, 노인학대예방 사업 등의 업무수행	
전북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요양보호사	1명	정규직	◦ 입소, 이용 노인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 건강확인, 의료기관 동행, 가사활동, 조리업무, 프로그램 지원 등	
장수군가족센터	방문교육지도사	1명	정규직	◦ 다문화가족 방문 부모교육 ◦ 방문 자녀생활서비스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1명	계약직	◦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지원사업 ◦ 기타 센터업무	재공고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2. 근로조건

구분	채용직위	근무기간	보수기준	근무형태	근무지
전북특별자치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임	임용일~정년 (수습평가 후 정규직 임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사회, 노인)이용시설_사회 복지직 사회복지사	주 5일 (주 40시간)	김제
전북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요양보호사	임용일~정년 (수습평가 후 정규직 임용)	· 기본급 기관 내규 · 수당 종사자특별수당 가족수당	1일 8시간 (3교대(4조)) (주야간)	전주
장수군가족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임용일~정년 (수습평가 후 정규직 임용)	·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II」 지도사 시급 적용	주 5일 (주 16시간)	장수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임용일~'26. 12. 31. (근로종료 후 근로계약 종료)	· 가족사업안내 호봉기준표에 따름 (팀원 5호봉까지 경력 인정 가능)	주 5일 (주 40시간)	장수

※ 공통사항: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위탁사업, 계속사업 종료 시 근로관계 종료(정규직 포함)

※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 특성상 주중 18:00 이후 및 휴일의 경우 착신통화 전환조치를 통해 신고 전화의 접수, 상담 및 응급사례 발생 시 즉시 현장조사가 가능해야 함

※ 장수군가족센터: 방문교육지도사는 9:00~19:00 내에서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1. 공통요건

※ 공통요건, 응시자격기준, 가점사항은 공고일 전일 기준임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 거주지 : 공고일 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 결격사유 : 채용분야별 다음 결격사유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구분	채용직위	결격사유
	공통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전북특별자치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전북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장수군가족센터	방문교육지도사,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2. 응시자격 기준

구분	채용직위	자격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임	0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수료한 사람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북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요양보호사	0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장수군가족센터	방문교육지도사	0 건강가정사·보육교사·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 자격을 보유한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임용일 전 양성교육 이수한 지도사에 대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사”로 임명 ※ 단, 양성교육 중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다음 회차에 있는 양성교육 중 집합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방문교육지도사로 3년 이상 활동하고, 퇴직한 지 3년 미만인 지도사를 재채용 할 경우 임용일 전 양성교육은 온라인 양성교육 6시간 이수 필수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0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2.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 학과

3. 가점사항

구분	요건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공고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만점의 5~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만점의 5%

- * 가점사항은 면접시험에 적용하되,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용
- * 가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산점 적용

Ⅲ

채용일정 및 세부사항

1. 채용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26. 2. 23.(월)~3. 5.(목)	○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청, 클린아이 등
응시원서 접수	2. 26.(목)~3. 6.(금)	○ 채용사이트에서 접수
서류합격자 발표	3. 18.(수)	○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면접시험	3. 24.(화)	○ 장소 : 전주
최종합격자 발표	3. 27.(금)	○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임용예정자 등록	3. 30.(월)~3. 31.(화)	○ 사회서비스원
임용	4. 1.(수)	○ 임용 시 근무일 변경 불가

2. 세부사항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6. 2. 26.(목) ~ 3. 6.(금), 18:00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jeonbukpass2.torc.co.kr/>)
-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유의사항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
 - 자격기준 중 필수사항(경력, 자격증, 교육 등)은 지원서에 반드시 기재
 - 제출서류는 자격기준 적격 여부 확인 및 서류심사를 위해 사용

○ 서류심사

- 심사대상 : 지원서 접수자 전원
- 합격인원 : 합격기준 적합자 전원
- 합격기준
 - 자격기준 부합 여부 및 제출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제출서류 미비, 지원서 등 작성 내용이 현저히 불성실한 응시자는 서류 부적격 처리
- 유의사항
 - 서류심사는 증빙서류 없이 지원서에 기재사항으로 심사하고, 추후 면접시험 시 제출된 서류 등의 허위기재 및 기재 착오 등이 있을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시험

- 시험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 예비합격자명단은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부여하며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순위 고득점자순으로 추가 임용할 수 있음
- 진행방법 : 면접위원별 블라인드 질의응답식 심층면접
- 합격기준
 - 공적 책무성·사회서비스원의 목적성 부합 여부, 이해력 및 지식수준,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인성과 직업관, 창의성 및 전문성 심사
 - 면접위원별 100점 만점으로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결정(면접위원 합계 평균점수에 소수점이 발생할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함)
 - ※ 동점자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면접점수 우선 항목별 고득점 순
 - (① 공적 책무성·사회서비스원의 목적성 부합 여부, ② 이해력 및 지식수준, ③ 창의성 및 전문성, ④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 인성과 직업관)
- 제출서류
 - 면접시험 당일 유효기간 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면접 시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비고	발급기간
공통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동 기재, 병역사항 포함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초본으로 확인이 불가 시 병적증명서 제출)	공고일 이후
해당자	자격증	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기간 무관
	졸업증명서	전문대학 이상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지 폐업 등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단, 폐업 사실증명 제출(세무서 발급 가능) * 미제출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교육이수	교육이수 증빙(교육이수가 응시 자격기준인 경우) * 노인학대예방교육, 양성교육, 건강가정사 등 ※ 노인학대예방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 교육센터 등의 수료 증빙자료임(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 가능기관 확인 가능)	공고일 이전
	재직증명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 미제출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공고일 이후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공고일 이후

○ 유의사항

- 접수 시 공고내용 미확인,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의 오기 또는 미기재, 지원서 형식 미사용, 연락불능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 불가
- 응시자는 접수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의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형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분야의 응시자가 채용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없는 경우 포함) 등에는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되지 않은 응시자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 따라 채용 확정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출 필요
- 채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안내문을 참조하여 해당 양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지원팀(063-906-403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